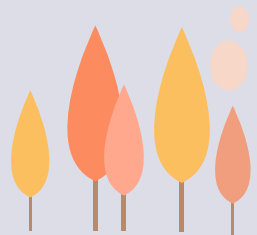


참고자료1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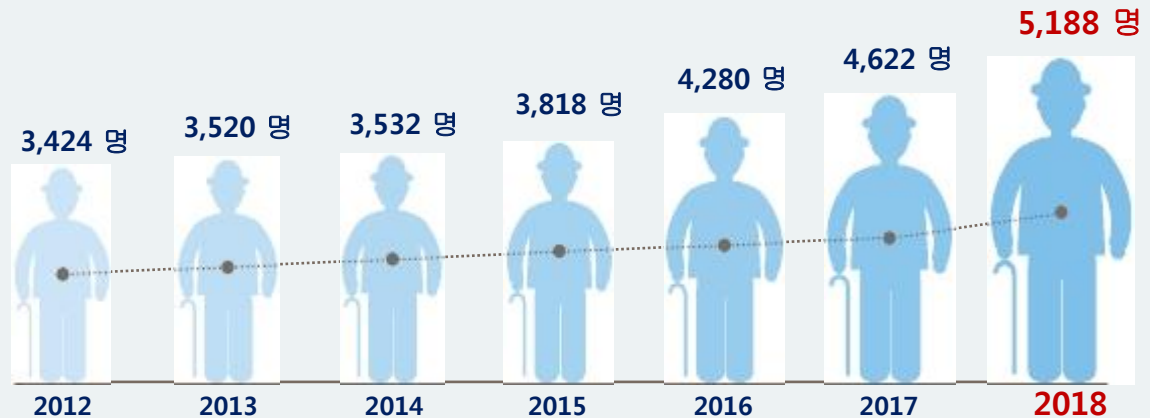
- 노인학대란?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.

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.

- ▶ (생활 점검) 오늘 하루,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?
- ▶ (방관 금지)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...’라는 생각에 모른 척 하지는 않았나요?
- ▶ (자기 점검)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?



■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발생현황



※ 출처 : '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', 보건복지부·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(2019)



참고자료1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

■ 노인학대 발생 현황

(1) 학대 행위자 : 남자 4,008명(70.8%), 여자 1,657명(29.2%)

(2) 피해 노인과 관계 : 아들 2,106건(37.2%), 배우자 1,557건(27.5%), 의료인·시설종사자 등 관계자 788건(13.9%), 딸 436건(7.7%), 피해자 본인 240건(4.2%) 등 5,665명(학대 행위자 1명 이상)

(3) 학대장소 : 가정 4,616건(89.0%), 시설 380건(7.3%), 병원 65건(1.3%) … 재학대 장소 : 가정(98.4%)

(4) 학대유형 : 정서적 학대(42.9%), 신체적 학대(37.3%), 방임(8.8%), 경제적 학대(4.7%)

(5) 피해노인 가구형태 : 자녀동거 1,738명(33.5%), 노인부부 1,512명(29.1%), 노인단독 999명(19.3%)

(6) 신고자 : 경찰관 등 관련 기관(65.6%), 친족(9.1%), 사회복지전담공무원(7.7%),

피해자 본인(7.5%), 노인복지시설 종사자(3.7%),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(1.4%)

(7) 재학대 행위자 : 아들 202명(48.9%), 배우자 153명(37.0%), 딸 25명(6.1%) 등 500명

(8) 노인특성 : 독거노인 999명(남자 322명, 여자 677명, 전체의 19.3%),

치매노인 1,207명(남자 323명, 여자 884명, 전체의 23.4%)

(9) 노-노학대 :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1,474건(71.9%), 피해자 본인 240건(11.7%), 기관 138건(6.7%)
… 전체 학대의 36.2%, 2,051건

*노(老)-노(老)학대 의미 : ①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인학대, ②고령의 부부간 발생하는 학대, ③고령의 자녀에 의한 학대,
④고령의 노인이 본인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학대 등을 말함



참고자료1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

■ 노인학대의 특성

- ① **지속성** :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
- ② **복합성** :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
- ③ **반복성** :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
- ④ **은폐성** : 묵인되고 은폐되며,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“그래도 내 자식”



■ 노인학대의 유형



신체적 학대

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

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


성적 학대

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

경제적 학대
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



방임

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


자기방임

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


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

참고자료1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

■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

- ①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합니다.
- ②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- ③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.
- ④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.
- 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.
- ⑥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.
- ⑦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.



■ 노인학대의 유형

- ①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- ② 다툼, 욕설 등의 큰 소리가 자주 들린다.
- ③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.
- ④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.
- ⑤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실조, 탈수상태이다.
- ⑥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.
- ⑦ 노인을 시설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





참고자료1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

■ 노인학대의 신고 의무

- ① (신고자) “누구든지”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② (신분보장)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)
- ③ (신분노출 금지의무 위반)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(노인복지법 제57조)
- ④ (비밀보장) 학대노인 업무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(노인복지법 39조의12)



■ 노인학대 신고 상담



(1) 노인보호 전문기관 **1577-1389**으로 신고하는 경우

→ 신고자 기준으로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결됩니다.

해당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 번호로 신고함이 바람직합니다.



(2)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**110**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**129**로 신고할 경우

→ 학대피해 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, 경찰서 등으로 이관 됩니다.